

의안번호	2215561
의 퇴 인	이건태의원
회 답 일	2026. 3. 5.
추계번호	25B72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녹색사업 전환 지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기후에너지 전환 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하 이 조에서 “녹색사업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녹색사업전환 대상 중소기업자의 발굴 2. 정보 제공 3.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4. 컨설팅 결과와 용자·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5. 녹색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 지원 6. 그 밖에 녹색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9조(녹색사업 전환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녹색사업전환 지원 (안 제49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여 정부가 이를 지원하거나, 정부가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¹⁾에 따라 녹색산업 분야를 포함한 신성장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융자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1] 중소기업 사업전환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주요내용	예산 (2026)
제도약지원자금(융자) (5161-301)	사업전환자금	급격한 산업·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전환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정책 자금 융자지원	312,500
제도약촉진 (5161-302)	사업전환촉진	산업 구조전환 가속화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단, 계획수립 등 지원 및 미래 신성장분야로의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도모	106,7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은

-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자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과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나. 협력체계 구축 (안 제49조제3항)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방식 및 수행업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